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1. 8.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6호로 2021년 7월 13일 정선희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 지급 대상 및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마을 장학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장학생의 정원(안 제5조 ~ 제7조)

라. 장학금액 및 지급정지 등 규정(안 제8조 ~ 제10조)

마.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편성

다. 입법예고(2021. 7. 16. ~ 7. 20./ 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장학금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11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입법체계상 정의 규정과 함께 기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3조(장학금의 종류)에서 유공자자녀 장학금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우등생 장학금을 모범생 장학금으로 개정하였음. 우등생의 사전적 의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모범생은 ‘학업이나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인바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지급대상) 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 단서규정으로 본 장학금 액수보다 다른 장학금 액수가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선정)에서 현행 조례상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어있던 것을 구청장이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8조(장학금액)는 매 학기별로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액지급하려는 것은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액 지급 가능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2021.5.13.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지급시기)에서 현행 조례상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10조(지급정지 등)에서 기존에 장학생 선발 후 학년을 마칠 때까지 1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개정된 통장자녀 장학금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임.
- 조례 개정 전에 고등학생 통장자녀는 학기별 지급으로 공납금 2회분의 장학금을 지급받았고 새마을자녀는 1년간 지급으로 4회분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1인당 2배의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통장자녀와 새마을자녀는 학기당 50만원의 장학금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되었음.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등 변화를 반영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새마을 장학금 지급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그 밖에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와 문장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